

서울특별시서초구'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122호)

- '97. 12. 8
- 총무재무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7. 11. 21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7. 11. 25.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12. 8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72회 정기회 중 총무재무위원회
제2차 회의 상정. (1일 1회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정 관 훈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초2동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대방면인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초2동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자녀 및 고급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여성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 복지관 건립 및 노인장, 유아원, 청소년 이용시설, 여성복지센터 등 주민복지향상의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,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제출함.

나. 주요골자

- 취 득 : 3 건
(토 지)

- 서초구 서초동 1332-6 (893.5㎡) : 서초2동청사 신축
- " 잠원동 76-9, 10 (311.2㎡) : 어린이집 건립
- " 반포동 74-7 (1274.4㎡) : 노인종합복지관 건립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:

가. 검토내용 : 생략

나. 검토결과

- 지방재정법 제77조 ①항에 의하면 매년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관리계획)은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동건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처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이나, '98년 새출예산안과 동시에 본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,
- 또한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누락될 것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.
- '98 구유재산관리계획 현황(일반회계)

(단위 : m,천원)

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소 유 자	소관부서
지목	소재지	수 량					
대지	서초동 1332-6	893.5	2,430,000	하반기	서초2동청사 신축부지	서 울 시	총 무 과
대지	잠원동 76-9,10	311.2	985,496	상반기	어린이집 건 립	재정경제원	가정복지과
대지	반포동 74-7	1,274.4	2,500,000	상반기	노인복지관 건 립	서 울 시	가정복지과
계	3건	2,479.1	5,915,496			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○ 서초2동 청사의 신축 경위와 현재 청사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?

→ 서초2동 현 청사는 대지 70평으로 2층 계단 등이 장애인들의 이용에 매우 불편하고 주변 주차시설이 없어 내방 민원인이 불편하므로 인근 아파트 앞 27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고, 현 청사는 본 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별도로 계획 수립 예정임.

○ 서울시 사유지는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 대상부지는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? 또한 대상의 부지의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는?

→ 대상부지는 서울특별시, 재경원 등 관계부서와 사전 구두 협의된 사항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며, 서초2동은 주거중심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나 현재 동사무소는 지을 수 없음. 그러나 서울시와 매수 사전협의과정에서 이미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으며, 잠원동은 일반주거지역, 잠중지이며, 반포4동은 일반주거지역의 대지임.

○ 서초2동 대상부지는 서초2동 구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중심지에 위치하게 할 수 있는가?

→ 서초2동 나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보았는데 주민이론, 기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현 부지가 적임지라고 판단하였음. 중심지에 적정부지가 있을 경우 종합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○ 복지시설은 지역의 형평성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. 방배지역은 타 지역과 비추어 복지시설이 열악한 편인데 이것은 체지비나 국유지가 없기 때문에 대상부지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일반 사유지를 매각해서라도 현실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?

→ 사유지의 매입은 구와 소유자간의 가격 이견으로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. 이러한 이견에서 상대적으로 방배지역의 지실투자가 어려웠는데, 계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겠음.

○ 추정가액의 산출은 ?

→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가격임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 : 없음